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안내

1. 공사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특정공사신고 등을 필하고 착공신고시 동 필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음저감대책 작성안을 참조하여 특정공사 신고 요망)
2. 공사현장 부근등에는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 방지시설 및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신고전 공사용 미관가림막 설치계획서를 우리 구와 협의후 미관가림막을 설치요망.
3. 친환경 도료만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합니다.
4. 공사도중 문화재 발굴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부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벌률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주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아래 시설물을 설치 요망.
 - 우유투입구 설치 지양·폐쇄 또는 다른 차단장치 설치.
 -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에는 철침, 덮개등 설치.
 - 1층 창문 · 베란다를 통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창 설치.
 - 놀이터,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 거양을 위한 CCTV설치
7. 전기설비 관련 협조사항(건설과)
 - 아파트 진출입로 공사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저촉시 이설여부 등에 대해 사전 협의요망
8. 조경시설 관련 협조사항(도시개발과)
 - 시설물설치시 친환경 제품사용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안전도 검사 필한 제품 사용
 - 바닥포장재는 투수성이 양호한 제품 사용하고 동선을 고려한 수목의 충분한 활착공간 확보 식재
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급의 품질과 금액일 경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사용 및 관내 전문건설업체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10. 고품격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건축물 및 부대시설(옹벽, 담장, 조경시설물, 도로 등) 시공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
11.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과 동일한 시공 및 품질관리 시행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하자발생 민원이 없도록 할 것.
12. 건축법·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등)과 교통영향 평가 등의 제처리되는 관계 법을 준수하고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 (관련부서)의 지도를 받아 제반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조건 및 안내문 내용은 감리자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 포함)및 사용검사 신청시 작성하여 이행 및 반영여부를 우리 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 ~ 5조)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나.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 8조)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 10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함.
- 구청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4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18조)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 ~ 21조)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23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구청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아.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32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842) 및 FAX(560-48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 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3조 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⑦ 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